

# 정 관

단기 4290년 11월 20일 제정

단기 4294년 3월 14일 개정

서기 1962년 1월 20일 개정

서기 1964년 1월 2일 개정

서기 1966년 1월 1일 개정

서기 1973년 1월 30일 개정

서기 1980년 2월 13일 개정

서기 1980년 11월 21일 개정

서기 1983년 4월 13일 개정

서기 1984년 2월 2일 개정

서기 1987년 2월 3일 개정

서기 1988년 3월 18일 개정

서기 1989년 4월 19일 개정

서기 1991년 4월 13일 개정

서기 1992년 3월 18일 개정

서기 1995년 3월 31일 개정

서기 1996년 4월 6일 개정

서기 1998년 4월 23일 개정

(기관 명칭 변경)

서기 1999년 5월 4일 개정

서기 2002년 4월 9일 개정

서기 2003년 4월 9일 개정

서기 2005년 3월 25일 개정

서기 2006년 5월 8일 개정

서기 2007년 12월 18일 개정

서기 2013년 3월 19일 개정

서기 2014년 5월 8일 개정

서기 2018년 3월 20일 개정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협회는 충청남도 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융화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업권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정부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책임 집행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9)

제 2 조 (명칭) ① 본 협회는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한다.(개정 2013.3.19)

②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3.19)

제 3 조 (구역) 본 협회의 구역은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치)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 소재지 또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개정 1996.4.6)

②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6.4.6)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개정 2013.3.19)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건의, 협력 및 협력(개정 1996.4.6)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검사
3. 운송원가와 운임제도의 연구
4.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공동시설의 개발 및 융자의 알선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운영
6. 운수종사자의 취업관리 (개정 2013.3.19)
7.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 추진 (개정 2013.3.19)
8.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연수와 교육 (개정 2013.3.19)
9. 운송사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간행물 및 홍보사업
10. 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전관리와 사업 향상에 관한 지도와 교육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조사 연구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사업의 추진 및 위탁행정업무 집행 (개정 2013.3.19)
13.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6 조 (삭제 2002.4.9)

제 7 조 (운영규정) 본 정관 외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9)

제 8 조(가입) 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입을 승인받은 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가입하려는 자가 정관 제1조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3.19]

제 9 조 (사용료등) 본 협회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조 (공고) 본 협회의 공고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11 조 (자격) ① 충청남도 내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충청남도 내에 영업소 인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본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개정 1996.4.6, 2013.3.19)

②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신고된 대표자가 법인인 회원을 대표하며 대표자의 변동이 있을 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3.19)

③ 1개의 법인에 대표자가 다수인인 경우 협회에 신고된 자가 법인인 회원을 대표한다. 또한 동일인이 2개 업체 이상의 대표자일 경우 각 업체수, 각 허가 대수에 의하여 법인인 회원을 대표한다.(신설 2013.3.19)

제 12 조 (대의원) ① 제11조에 규정된 회원중 허가대수 15대 미만의 회원은 천안시에서 2명, 아산시에서 1명, 당진시에서 1명,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1명, 공주시·청양군·부여군에서 1명, 흥성군·예산군에서 1명, 서산시·태안군에서 1명, 보령시·서천군에서 1명의 대의원을 각각 선출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개정 1996.4.6, 2013.3.19)

② 대의원 선출방법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에서 정한다.(신설 2013.3.19)

제 13 조 (권리) 본 협회 회원 및 대의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 의결권
2. 총회소집 청구권
3.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4. 본 협회의 할당된 물자의 수배
5. 본 협회의 업무관련 서류열람 및 사본 요구 등  
단, 중요문서로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개정 1996.4.6)
6. 본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참여 및 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제 14 조 (의무)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2013.3.19)

1.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신설 2013.3.19)
2. 협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신설 2013.3.19)
3. 허가사항의 변경시 통지 (신설 2013.3.19)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공제조합의 가입 및 분담금의 납부 (신설 2013.3.19)
5. 회비 및 특별회비의 부담 ;

회원은 협회의 운영 및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구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이 법인인 경우의 대표자는 제회비부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3.3.19)

6. 제회비 등의 반환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정관 제8조에 의거 납부한 가입금 및 전호에 의거 납부한 제회비 등이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3.19)
7. 제회비 등의 납부방법 ;  
부과된 제회비 등의 납부의무자는 납입고지일까지 협회 거래은행 계좌에 지체없이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19)

- 제 15 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3.3.19)
- ② 본 협회는 정관 제14조 제1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개정 2013.3.19)
- ③ 본 협회는 회원이 정관 제14조 제5호를 위반하여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협회는 6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에게 그 내용을 최고하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체납한 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3.3.19)
- ④ 위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종전의 회원이 스스로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한 경우 내지 체납회비를 완납하고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신설 2013.3.19)

###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명
  2. 부이사장 3명 이내
  3. 이 사 약간 명
  4. 전무이사 1명
  5. 감 사 2명
- ②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회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중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6.4.6, 2013.3.19)
- ③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며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형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3.19)
- ④ 전무이사는 회원 이외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4.6, 2013.3.19)
- ⑤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는 취임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한다.(개정 1996.4.6, 2007.12.18, 2013.3.19)

제 17 조 (임기) ① 본 협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6.4.6, 2003.3.25, 2007.12.18)  
다만, 이사장은 2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18.3.20)  
②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중 결원이 생겨 정기총회까지 유예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전 퇴임하는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 이내인 경우 퇴임하는 이사장이 부이사장 중에서 그 직을 보선지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사회의의 추인(追認)을 거쳐 이사장으로 보선한다. 또한 이 경우도 보선된 이사장은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하며 제1항 단서에 관계없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6.4.6, 2013.3.19, 2014.5.8)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시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3.3.19)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선임 부이사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개정 1996.4.6, 2013.3.19)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장, 부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개정 2013.3.19)

제 19 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재산 및 업무상 부정사실을 발견한 때는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소집자중 1인이 의장이 된다.

제 20 조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단, 전무이사는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21 조 (고문) 본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추대한다.

제 22 조 (직원) 본 협회 사무소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전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장 회 의

제 23 조 (회의종류)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1996.4.6, 2006.5.8)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9조에 의한 감사의 보고가 있을 때
  3. 의결권자의 3분지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단, 이 경우에 이사장이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 24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의 3분지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사유를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때
- ② 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 (정족수)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채택한다.

단,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안과 해산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 조 (표결권)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7 조 (총회특례)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면결의로써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3.4.9, 2013.3.19)

제 28 조 (대리인) ① 대리인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3.19)

단, 대의원은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개정 2013.3.19)

② 전항의 대리인은 회원인 법인의 임원 내지 회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9)

제 29 조 (총회의결)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회비의 부과
4. 회원의 감독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기채 및 기 상환
6. 임원 불신임안 처리
7. 기타 중요한 사항

단, 사항의 제2호 및 제3호는 총회의결 확정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하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부과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가경정 예산승인건과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한다.(개정 2007.12.18)

제 30 조 (이사회 의결)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1. 제7조의 제 규정의 제정
2. (삭제 2013.3.19)
3. 기채 및 기 상환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제29조 단서에 의한 위임사항
6. 총회에 제출할 의안
7. 기타 협회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 31 조 (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회원 중 총회에서 지명한 5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19)

1. 개최의 일시, 장소
2. 의결권자의 총수 및 참석회원 수 (개정 2013.3.19)
3. 부의안건
4. 의사요령

5.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

6. 기타 참고사항

②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2명 이상의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13.3.19)

##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32 조 (재산)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 자산으로서 이를 조성한다.

1. 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물건
2. 회비
3.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4. 본 협회 사업 및 재산에서 생한 수익
5. 사용료 및 수수료
6. 기타 수입

제 33 조 (사업년도)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말일에 종결한다.

제 34 조 (감사)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 1주일 전에 협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협회에 비치하고 회원의 열람에 공한다.

제 35 조 (결산승인) 이사장은 전조(前條)의 감사가 감사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삭제 2013.3.19)

## 제 6 장 해 산

제 37 조 (해산) 본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 된다.(개정 2013.3.19)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단기 4290년 11월 20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

단기 4294년 3월 14일 개정

서기 1962년 1월 20일 개정

제 2 조 (상동) 본 정관은 서기 196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상동) 본 정관은 서기 196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상동) 본 정관은 서기 1973년 1월 30일 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상동)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0년 2월 13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단, 정관 제3장 제16조에 한 하여는 1981년 1월 제24기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의거한 선임된 임원으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6 조 (상동)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0년 11월 21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7 조 (상동)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3년 4월 13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8 조 (상동)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4년 2월 2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9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7년 2월 3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0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8년 3월 18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89년 4월 19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91년 4월 13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92년 3월 18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95년 3월 31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5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96년 4월 6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6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98년 4월 23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7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1999년 5월 3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8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02년 4월 9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19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03년 4월 9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20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05년 3월 25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2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06년 5월 8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2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07년 12월 18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하며, 개정당시 재임임원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23 조(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관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일반화물 운송사업자가 세종시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등에 의한 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을 보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 관련 협회의 회원자격은 이 정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세종시내 허가대수 15대 미만의 회원은 정관 제12조에 의거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청양군·부여군 군(群)의 일원으로 행사한다.

제 24 조(시행일 및 정관 제15조 제2항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은 도지사가 승인한(2013년 3월 19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회비가 12개월 이상 체납된 회원인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제 25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14년 5월 8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 26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2018년 3월 20일)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